

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

2018. 6. 20. 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양자나노과학연구소 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양자나노과학분야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표면 위 원자의 양자 특성 연구
2. 분자 및 나노 구조의 양자 특성 연구
3. 양자나노과학에 관한 이론적 연구

제3조(소장, 부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- ③ 연구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이론 및 실험 분야의 주사탐침현미경 연구팀, 양자자석군측정 연구팀, 양자시스템이론 연구팀 및 행정실을 둔다.

- ② 주사탐침현미경 연구팀은 주사형터널링현미경 및 원자힘현미경 등을 이용한 표면 위 원자의 양자 특성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양자자석군측정 연구팀은 엑스선 분광 및 전자스핀공명 등을 이용한 분자와 나노 구조물의 양자역학적 성질에 대한 실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양자시스템이론 연구팀은 양자나노과학 분야의 이론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행정실은 일반 관리, 인사, 재무, 자산관리, 홍보, 구매, 글로벌 허브 및 기타 타 연구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5조 (팀장) ① 각 연구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.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행정실에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. 행정실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- ③ 팀장 및 행정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

제6조 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또는 타 대학의 교수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 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 연구소 규정에 따른다.
-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 혹은 부소장이 임면한다.
- ④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8조 (행정인력)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-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③ 기타 행정인력의 급여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
제9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나노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, 부소장, 교무처장, 연구처장, 자연과학대학장, 물리학과장 및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 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연구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11조 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 연구소의 경비는 IBS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
부 칙 (2018. 6. 20. 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